

대전지방법원 2023. 2. 14 선고 2021가단114027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율

담당변호사 박미소, 서혜연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동화

변 론 종 결 2023. 1. 17.

판 결 선 고 2023. 2. 14.

주 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주식회사 C 사이에 2018. 4. 18. 체결한 매매계약을 각 취소하고, 피고는 주식회사 C에게 대전지방법원 등기국 2018. 4. 20. 접수 제1792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주식회사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등기국 2018. 4. 20. 접수 제1792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을 상대로 용역비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9. 5. 2. 'C은 원고에게 69,100,427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5.부터 2019. 5. 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대전지방법원 2017가합2230호). 이에 대한 항소심에서 2020. 1. 15.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C은 원고에게 28,465,50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3.부터 2020. 1. 15.까지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추가로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대전고등법원 2019나12396호), 위 판결은 2020. 4. 6. 상고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20다216233호).

나. 주식회사 D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① 2015. 8. 28. C의 대표자 사내이사 E의 딸인 피고 앞으로 2015. 8. 1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② 2015. 11. 9. C 앞으로 2015. 11. 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③ 2018. 4. 20. 피고 앞으로 2018. 4. 18.자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각 가등기'라 한다)가 각 마쳐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주위적으로, 이 사건 매매예약은 원고를 비롯한 C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매매예약의 취소 및 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각 가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나. 예비적으로, 이 사건 각 가등기는 C와 피고의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이므로, C의 채권자인 원고는 C을 대위하여 이 사건 각 가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3.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원고는 늦어도 2020. 2. 18. 이전에 피고가 이 사건 각 가등기를 마친 사실 및 이 사건 매매예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았고,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민법 제406조 제2항에 의하면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는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도록 되어 있는바, 여기에서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는 것은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 즉 그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으며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0286 판결 등 참조).

2) 을 제7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변호사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의뢰하여, 위 변호사가 2020. 2. 18.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2020. 2. 26. 대전지방법원에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가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사정이 위와 같다면 원고는 2020. 2. 18. 이전에 C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이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할 뿐 아니라 C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음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로부터 의뢰를 받은 변호사가 2020. 2. 26.에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원고는 늦어도 위 2020. 2. 18.에는 그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부분은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21. 2. 25.에 제기된 것으로서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4.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원고가 주장하는 피보전채권은 금전채권인데, C이 현재 무자력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채권자대위 청구는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판단

- 1)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함에 있어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금전채권인 경우에는 그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즉 채무자가 무자력인 때에만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76556 판결 등 참조).
- 2)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5, 7, 9, 10, 12호증, 을 제5, 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 C의 재산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적극재산(13,018,044,928원)이 소극재산(10,316,219,938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소극재산			
순번	내역	가액(원)	비고
1	공주시 F, G, H 각 토지	445,269,000	2019. 8. 21. 기준 감정가
2	I 토지	390,600,000	
3	H 외 2필지 지상 건물	43,243,200	
4	I 외 1필지 지상 건물 (J동)	151,155,200	
5	I 외 1필지 지상 건물 (K동)	252,446,800	
6	대전 중구 L 지상 M건물 N호	191,239,275	'같은 총 다른 호실의 단위면적 당 매매가 × 해당 호실의 면적'으로 산정
7	위 M건물 O호	149,574,945	
8	위 M건물 P호	157,907,811	
9	위 M건물 Q호	592,466,773	
10	위 M건물 R호	164,990,747	
11	위 M건물 S호	67,214,283	
12	위 M건물 T호	53,763,719	
13	위 M건물 U호	58,504,175	
14	이 사건 각 부동산 (위 M건물 V호 ~ W호)	6,230,600,000	분양가
15	위 M건물 X호	524,033,000	
16	위 M건물 Y호	484,680,000	
17	위 M건물 Z호	492,416,000	
18	위 M건물 AA호	246,208,000	
19	위 M건물 AB호	483,444,000	
20	위 M건물 AC호	236,845,000	
21	위 M건물 AD호	236,845,000	
22	위 M건물 AE호	691,561,000	
23	위 M건물 AF호	227,138,000	
24	위 M건물 AG호	445,899,000	
25	위 M건물 AH호	1,517,271,000	

합계		13,018,044,928	
소극재산			
순번	채권자	채무액(원)	비고
1	원고	156,357,845	이 사건 피보전채권
2	AI 유한회사	51,770,000	
3	AJ	55,000,000	가압류 청구금액
4	AK	7,700,000	
5	공주세무서	1,880,829,760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AL 부동산강제경매사건 의 교부청구액 참조
6	공주시	58,652,690	
7	대전광역시 중구	75,178,750	
8	국민건강보험공단	23,494,580	위 경매사건의 청구금액 참조
9	AM	31,426,229	
10	AN 주식회사	461,583,255	
11	AO 주식회사	2,599,397	대전고등법원 2020나11696 청구이의 사건 판결에 따름
12	주식회사 AP	12,947,706	
13	AQ	300,000,000	가압류 청구금액
14	AR	70,000,000	
15	AS	300,000,000	
16	AS	350,000,000	
17	AT	234,000,000	
18	AU	400,000,000	
19	AV	527,979,726	
20	AK	7,700,000	
21	AW	70,000,000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22	AW	900,000,000	
23	AX	1,050,000,000	
24	주식회사 AY	780,000,000	
25	AZ 주식회사	650,000,000	
26	BA조합	1,859,000,000	
합계		10,316,219,938	

이에 대하여 원고는 BB의 BC조합에 대한, BD 및 B의 BE 주식회사에 대한, B의 주식회사 BF 및 AZ 주식회사에 대한 각 근저당권부 채무의 실질적인 채무자는 C이므로, 위 각 근저당권부 채무를 C의 소극재산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피고는 C이 공주세무서에 대한 체납세금을 모두 납부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12호증의 기재와 이 법원의 공주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회신 결과에 의하면, 2019. 7. 31. 기준 공주세무서에 대한 체납세금은 1,942,806,970원이고, 위 2019. 7. 31. 이후 C이 공주세무서에 추가로 납부한 금액은 합계 61,977,210원에 불과하므로, C의 공주세무서에 대한 체납세금은 적어도 1,880,829,760원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위와 같이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C이 무자력 상태에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부분은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5.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민하

별지